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16일 01시 36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건설	3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

2023.07.13 조회수 276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선화 연락처 061-659-4089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오는 8월 21일 접수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40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http://www.yeosu.go.kr>)



**2023년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 ~ 2023.8.21(월)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포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포(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1인법, 상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4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jpg (248 hit/ 574.0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65세 이상 어르신 '찾아가는 노인결핵 무...

다음글

여수시, 칠옥수수 신품종 평가회...농특산물 브랜...

Yeosu Web Contents



여수시